

제307회 임시회
2012. 3. 12.(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3. 12.(월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3월 5일

(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김재갑)

가. 제안이유

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
- 상위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이

삭제(법률 제9843호, 2009.12.29)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나 시 찬)

-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
- 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운영 비용을 절감하고,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
-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위원회 심의·조정기능을 어떻게 보완·대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
개정 전	개정 후('09.12.29)
<p>제6조 (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지방발전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제4조제2항에 관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③그 밖에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6조 삭제 <2009.12.29></p>